

보건관리자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



송 근 회 보건관리자
(주) 인터엠 대리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예고없이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거나 다치게 하여 근로자나 회사의 소중한 생명과 기능, 재산상의 손실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 안전관리는 건강한 근로자의 손에 달려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정한 행동요인을 충분히 파악해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 체격, 기질 등 심리적인 자질과 건강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그 직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보건관리자와의 적정배치 협의가 필요하다.

더우기 사고 소질자나 잠재적 경향성이 있는 자는 안전심리학적 관리대책이 요망된다.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는 질병과 사고를 도시에 유발시키는 큰 인자이므로 질병과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할

등이 안전관리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안전생활, 1997. 5)

이러한 예방활동은 근로자 개개인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함께 주변환경과 안전장치 및 안전활동, 안전의식이 함께 깨어있도록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활동을 주는데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안전관계 종합적인 분석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함께 수행함으로써 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관리자로서의 안전관리 측면의 시각도 필요하므로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측면과 안전관리 측면의 활동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관리와 보건관리가 서로 만나는 총괄적인 의미에서의 여러가지 업무는 안전관리자든 보건관리자든 서로 만나는 총괄적인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는 안전관리자든 보건관리자든 어느 한쪽에서 주관하고 서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바람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두 관리자측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총괄적인 안전보건관리의 보건관리자적 시각과 안전보건관리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이다.

2. 사업장 및 업무 개요

경기도 양주군 덕정리 덕정공단내에 위치한(주) 인터엠(구 인켈 P.A)은 산업용 오디오, 앰프, 스피커, 믹서, CCTV 등 첨단 영상 음향기기 전문회사인 당사사업장에게 안전관리자가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인 상무이사를 필두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와 라인의 관리감독자, 또 새로 위촉된 명예안전감독관 및 근로자 전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

총괄적인 안전보건관계 업무는 대개 행정적인 업무여서 남자사원인 안전관리자나 노조관계자의 업무로 수행되고 있으나, 일부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필자처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행정에 약한 여성인 의료인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건강 진단 및 1차 의료행위 업무만으로 한정지우게 되는 편견을 없애는 데 한몫을 하고자 하는 바램이 있다. 필

자의 경우에 있어서 수행하는 안전관련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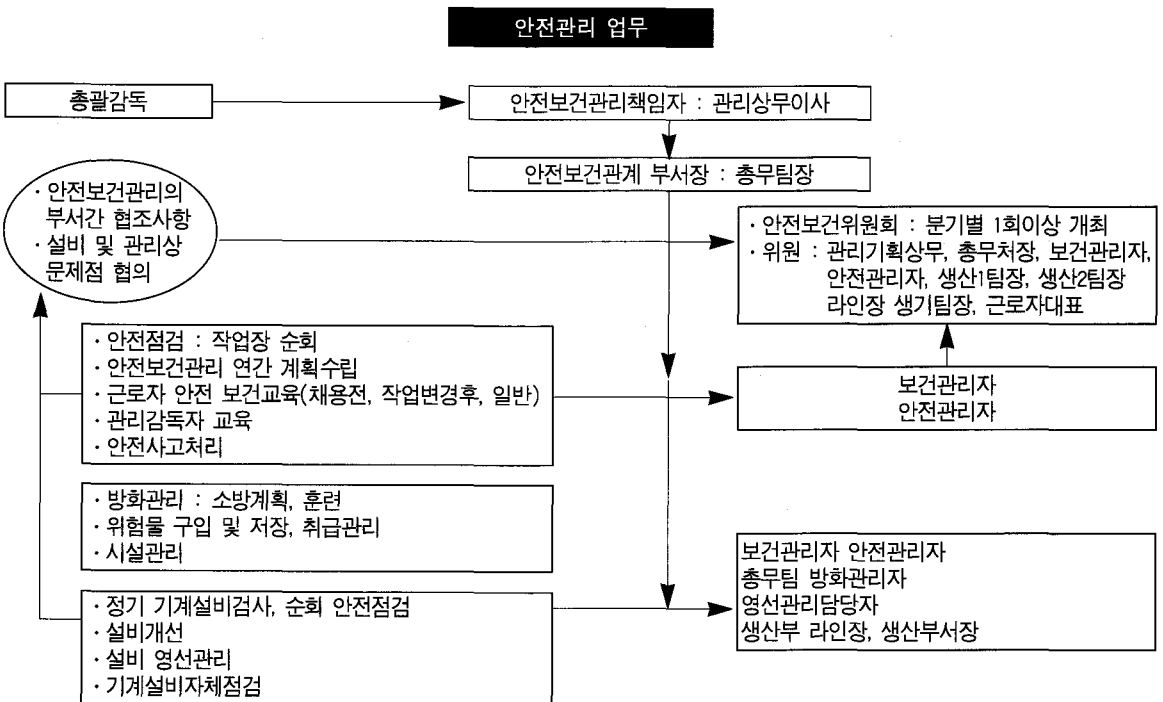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 관련 전반적인 행정업무로 노동부 관련 업무나 안전협회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연초 연간 안전보건관리 세부계획 수립 협의와 세부계획 보고, 문서수발이나 관리감독자교육 차출절차에 따른 교육의뢰, 안전보건교육 점검 및 보고, 안전점검 이행사항 접수보고 및 독려활동을 한다. 실제 기계나 기구관련 점검이나 검사, 소방, 시설관리, 안전관리는 해당 담당자가 수행하고 총괄 보고만 한다.

당사 안전관리 업무는 <그림 1>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관리 연중 추진계획 수립보고서 작성, 무재해 운동, 안전사고관련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필자가 하고 있다.

나) 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하는데 협의안전접수, 일정조정, 소집통지,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그림 1>

수행한다. 이 위원회 업무에서는 안전점검사항의 종합토의가 이루어지는데 토의안전이나 안전보건 관계 부서인 총무팀의 보고사항 등의 회의자료를 보건관리자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건관리에 관련된 홍보사항이나 협의사항, 주의사항 등의 의제나 보고사항 등을 의제나 보고사항으로 쉽게 들어가게 하므로서 보건관리자로서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잇점을 가지게 하는 업무라고 생각한다.

토의안전은 안전사고의 사례를 보고하여 예방조치 방안을 토의하며, 안전점검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법을 모색하고, 필요시 위원 전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당부서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자료 작성시에는 전회의록을 미리 검토하여 이전 위원회 결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시행되도록 업무관계자에게 중재하고 진행사항을 회의자료로 보고한다.

회의록은 일정양식으로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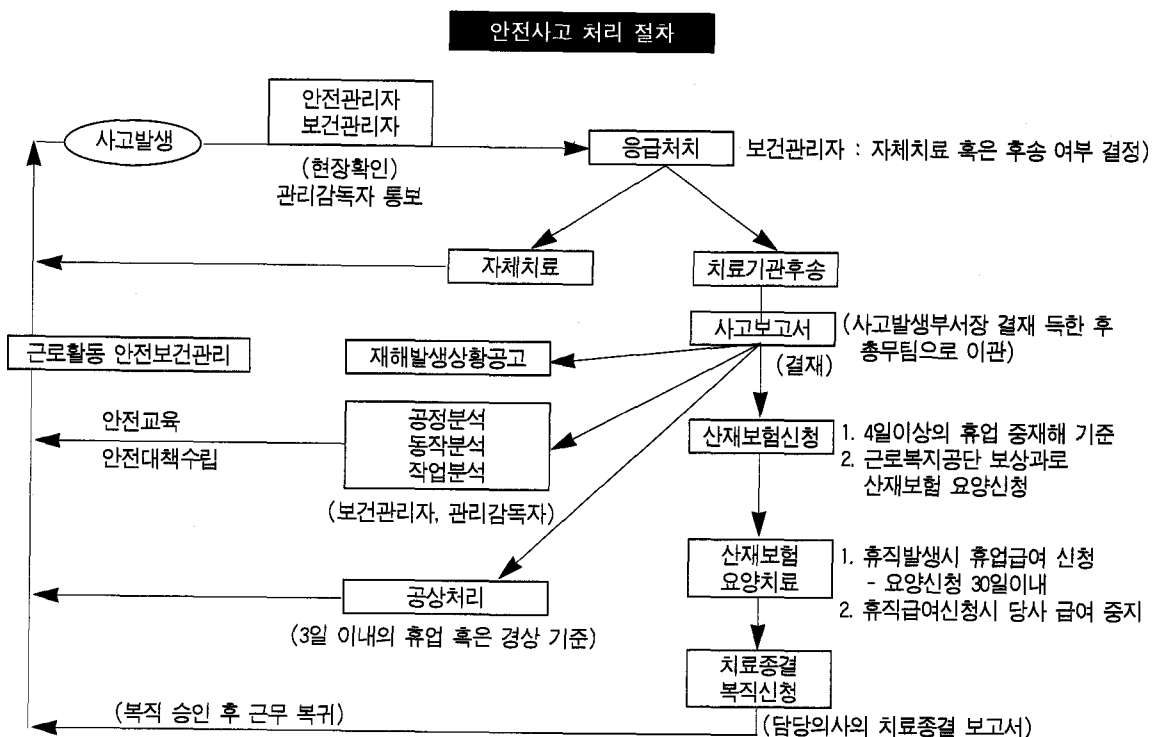
다) 안전사고 예방 관련업무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사업장 안전점검과 위험기계 및 설비의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와 건강상태나 심리적 상태, 작업자세나 주위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안정되어야 예방이 된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이다.

예방적인 업무인 두 관리자의 사업장 순회로 안전점검, 보건관리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와 기타 관계되는 조치가 잘 진행되도록 한다.

안전사고 업무 흐름도는 <그림 2>와 같으며 전체적인 총괄은 필자가 진행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보건관리자로서 의료기관 후송의 결정이나 산재보험신청 의사와의 면담후 예후나 치료와 관련된 근로자에 관한 제반 사항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한다. 작업자세, 설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하게 하며 이를



< 그림 2 >

공고하거나 사례발표를 하도록 한다.

안전사고 보고서는 치료기관 후송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안전사고 자체가 경미하고 근로자의 상해정도가 미약하다라도, 대형사고로의 발전위험이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당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 기계 및 설비가 많지 않고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어서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고 보건관리자 자체 치료가 가능한 외상사고가 대부분이다.

<표 1>과 같이 당사의 안전사고 관련 사항을 1997년 8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통계를 내어보면 1년간 외상치료의 건수가 128건의 외상 사고가 있었고, 근골격계 염좌나 근육통은 138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경우가 8건 (3%) 있었으며 산재요양은 요부염좌로 1명 있었으며 97%는 경미한 외상으로 자체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작업으로 인한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대부분이다.

라)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업무

산재보험 관련업무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수와 임금 총액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사업장 실태조사표, 산재보험 개산 및 정산보험료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와 당사와 관련된 재해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개산 및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업무이다.

산재보험요양 신청업무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승인을 받아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요양신청 근로자의 근태확인서, 평균임금산정내역, 경위서 등의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이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맺는 말

올해는 IMF경제 위기와 함께 8월의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 재해의 예방대책과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재해는 당하기 전에 예방활동으로 막아야 하며, 또 그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도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안전활동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안전대책수립을, 보건활동으로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관리,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지 않고 대신 안전규정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실제 지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엄청난 벌금과 엄격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산업안전, 1997.8).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전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무고용만 완화시켜 놓은 실정이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책임이 더욱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하고 무해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이익창출의 활동임을 입증해 경영주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 근로자들의 높은 안전보건의식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하며 자신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고, 따라서 재해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산업안전, 대한산업안전협회, 1987. 8, 제157호
- 안전생활, 안전신문사, 1997. 5, 제9권 5호

< 표 1 >

외상		근골격계질환		총합계		공상진료분류		
공상	사상	공상	사상	공상	사상	산재요양	의료기관후송	자체치료
128건	62건	138건	173건	266건	235건	1건	7건	258건
67.4%	32.6%	44.4%	55.6%	53.1%	46.9%	0.4%	2.6%	97%